

January 11, 2021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주식회사법, 공정거래법 변경 내용 소개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2020. 11. 2.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옴니버스법은 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ii)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v) 노동 분야 개혁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옴니버스법 제109조를 통하여 「주식회사법」(*UU 40/2007*), 제118조를 통하여 「공정거래법」(*UU 5/1999*)이 각 개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분야에서는 i) 법인격 취득 절차, ii) 2인 주주 요건의 일부 완화, iii) 수권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iv) 영세 및 소기업에 관한 규정이 다수 신설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i)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할, ii) 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단기간에 관한 사항, iii) 행정상 제재 처분의 근거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iv)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등이 일부 삭제 및 폐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법 관련 개정의 주요 내용

옴니법스법 제109조를 통하여 변경된 주식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법 관련 개정 주요 내용>

사항	기존 2007년 주식회사법 내용	변경된 내용
법인격 취득 관련 (제7조)	○법인격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법무인권부 장관의 결정서를 발급받은 날 → 법인격 취득	○<u>법무인권부에 등록 + 등록증명서 발급</u> → 발급 이후 법인격 취득
2인 주주 (제7조)	○원칙적 2인 주주 요건 -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1인 주주가 되는 경우, 반드시 6월 이내에 i) 다른 사람에게 주식의 일부를 이전; 또는 ii) 당해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야 함 ○6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1인 주주인 경우 → 당해 주주는 회사의 모든 계약 및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 부담 → 법원은 회사에 대한 해산 판결 가능	○원칙적 2인 주주 요건 동일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주주의 책임 내용 동일 ○1인 주주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 요건 확대 → 기존 100% 국영기업,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증권거래소, 청산 및 보증기관, 예금 및 결제기관에 대해서만 1인 주주 허용 → <u>지자체 소유 기업, 마을 소유 기업, 영세기업 및 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1인 주주가 가능하도록 신설(중규모 기업은 해당 없음)</u> ○영세기업 및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세중소기업법」(UU 20/2008) 제6조의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됨
회사의 수권자본 (제32조)	○회사의 최소 수권자본은 50,000,000 루피아 ○최소 수권자본 미만의 회사 설립 금지	○최소 수권자본에 관한 규제 삭제 ○다만, 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수권자본을 보유할 것을 규정 ○회사 수권자본의 규모는 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소규모 자본으로 회사 설립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u>외자투자회사(PMDN)에 대해서는 투자법 및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부령, 대통령령이 주식회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그 결과 Per BKPM 5/2019 규정상 투자금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유의</u>

영세 및 소기업에 관한 규정 신설 (제153A조 내지 제153J조)	○기존 주식회사법상 영세 및 소기업에 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영세 및 소기업의 설립 방법, 절차, 주주의 요건,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영세 및 소기업에 대한 1인 주주 설립 가능 규정 신설 - 영세 및 소기업의 신설은 설립의향서의 작성으로 설립 가능 - 주주는 자연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 영세 및 소기업의 청산 사유 신설 - 영세 및 소기업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효과에 관한 규정 신설 - 법인 설립에 관한 비용 감면 근거 규정 신설 - 주주의 책임과 그 예외에 관한 규정 신설
--	--	--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의 주요 내용

옴니법스법 제1118조를 통하여 변경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 주요 내용>

사항	기존 1999년 공정거래법 내용	변경된 내용
공정위(KKPU) 처분에 관한 이의 관할 관련 (제44조)	○공정위는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처분 ○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할 의무 → 만약,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u>지방법원에</u>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공정위 심사 완료 및 처분에 관한 규정 기존과 동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보고 의무 동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동일 ○다만, 처분에 대한 이의 관할이 기존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에서 ‘<u>상업법원(Pengadilan Niaga)</u>’으로 변경되었음 →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잘못된 관할 법원(지방법원)에 이의제기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되므로 주의 요망

사업자 이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간 (제45조)	○ 공정위 처분 관련 사법심사 절차 - 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이의소송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리 개시 - 지방법원은 심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공정위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했음 - 지방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그 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은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판결 선고하도록 의무화	○ 공정위 처분 관련 변경된 사법심사 절차 - 상법법원은 사업자의 이의소송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리 개시 - 상법법원은 더 이상 30일 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판단 가능 → 상법법원은 심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 - 상법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그 상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은 더 이상 30일 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판단 가능 → 대법원은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
공정위 과징금 상한 등 변경 (제47조)	○ 공정위 처분의 유형 - 불공정한 계약의 취소 - 시정명령 - 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인수에 대한 취소 결정 - 손해배상명령 - 과징금의 상한과 하한이 법정(10억 루피아 이상 250억 루피아 이하)	○ 공정위 처분의 유형은 기존과 동일 ○ 다만, 과징금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 삭제 → <u>개정법상 250억 루피아 이상의 과징금 처분 가능</u> ○ 공정위의 다양한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부과 기준, 유형, 과징금 금액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령으로 마련하도록 함
형사처벌 규정 일부 변경 (제48조)	○ 공정위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병과 가능 - 과점, 시장분할, 사업자 배척(boycott), 물량고정, 트러스트, 수요독점, 수직결합, 가격담합 계약, 배타적 계약 규정 위반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 - 최소 50억 루피아 이상 최대 25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 형사처벌 대상 축소 - 과점, 시장분할, 사업자 배척(boycott), 물량고정, 트러스트, 수요독점, 수직결합, 가격담합 계약, 배타적 계약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 <u>i)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ii)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거부행위, iii) 조사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최대 50억 루피아 이하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u>

추가 제재 삭제 (제49조)	○과점, 시장분할, 사업자 배척(boycott), 물량고정, 트러스트, 수요독점, 수직결합, 가격담합 계약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재 부여 - 사업면허 취소 -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기간 동안 이사회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로 취임 금지 -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특정한 활동 중단	○<u>추가 제재에 관한 규정 삭제</u>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i) 사업면허 취소되거나 ii) 이사 또는 감사 취임이 금지되는 제재가 사라짐
---	--	---

평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분야에서는 회사 설립 등의 편의를 장려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영세기업 및 소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활동의 편의, 개방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법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영세 및 소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식회사법이 개정된 만큼 인도네시아 경제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고용확대 등의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과 함께 기존의 형사처벌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삭제한 것은 실효적 제재를 통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추가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추가제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자의 사업활동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요소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공정위의 처분 관할이 기존 ‘지방법원’에서 ‘상업법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그 내용을 주시하여 불복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개

인도네시아 법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세종 인도네시아 그룹

법무법인(유)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수강하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도서출판 유로, 2018)를 저술하는 등,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최고의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파견 전에 약 9년간 부동산 투자, 건설, PPP, M&A, 일반 기업자문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종이 제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로펌인 AKSET(ARFIDEA KADRI SAHETAPY-ENGEL TISNADISASTRA)은 인도네시아 일류 로펌의 파트너들이 나와 2010년 설립한 로펌으로서 4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KSET은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 로펌으로 출발했고, 현재는 일반 기업자문, M&A, 금융, 노동, 소송 등에서도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입니다.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제휴 로펌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로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소: Lantai 29 The Plaza Office Tower, Jl. M. H. Thamrin, Kav.28-30, Jakarta 10350, Indonesia

Contact us



김두식

대표변호사

T. 02-316-4223

E. dskim@shinkim.com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T. +84-28-3827-4214

E. ymgil@shinkim.com



이대호

파트너변호사

T. +62-877-8392-4470

E. dholee@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